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농림축산식품부의 사무 중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폐업·전업 지원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림축산식품부의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농촌정책국 1개 과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농림축산식품부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존속기한이 2024년 6월 25일에 만료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12. ~ 4.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 중 “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을 “2명(6급)”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중 “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행정안전부”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를 “충원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637”을 “63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33”을 “632”로 하며,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2”를 “21”로 한다.

별표 1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7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개식용종식추진단(존속기한: 2027년 4월 29일)

총계	7
일반직 계	7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시설사무관·통계사무관	

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사서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전산
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
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
경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
도사

1

행정주사보·농업주사보·수의주사보·시설주사보·통계주사
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방재안전주사보·방송통신주
사보·사서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칙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6]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관련)

1.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동물복지환경정책관	0명	2025년 9월 30일까지

2.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

조직	정원	평가기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불관리과	4명 (4급 1명, 6급 2명, 7급 1명)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6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으며, 별표 7의 정원 중 <u>3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u>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제29조(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 ----- ----- --. ----- ----- ----- ----- ----- ----- <u>2명(6급</u>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생략)	제37조의2(개식용종식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	② ----- ----- ----- ----- -----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u>행정안전부, 1명(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수의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u>은 <u>식품의약품안전처</u> 소속 공무원으로 <u>각각 충원해야 한다.</u>	----- --- <u>행정안전부</u> ----- ----- ----- ----- ----- ----- ----- ---- <u>충원해야 한다.</u>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9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부칙
<u>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① 종전의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73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에 따른 정원으로서는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1의 인원을 제외한 별표 7의 정원 1명(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명)은 2024년 6월 25일까지 존속한다.</u>	<u><삭 제></u>

신·구정원대비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7]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29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637	636	-1
일반직 계	633	632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 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2	21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7]

농림축산식품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2항, 제36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37조의2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9	7	-2
일반직 계	9	7	-2
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 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수의 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	<삭 제>	-1
행정주사·농업주사·수의주사 · 시설주사·통계주사·전산주 사·공업주사·방재안전주사· 방송통신주사·사서주사·환경 주사·농업연구사·수의연구사 · 기록연구사 또는 농촌지도사	2	1	-1